

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중 "현지교통비, 숙박비, 식비, 식탁료"를 "현지교통비, 숙박비, 식비"로 한다.

제6조중 "50,000원"을 "60,000원"으로 한다.

[별표 1] 및 [별표 2]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.